개선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케이디비생명보험

2. 조치일 : 2019. 5. 24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업무 불합리

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해당 내규를 정비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

① 내규 「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」에서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내규의 제·개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통제활동의 운영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·운영 현황을 이사회가 적절히 감독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

② 금융회사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나, 내규에는 실제소유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상위 법규와 상이함

③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내규에 마련하고 있으나,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이 보험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 등 보험상품 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

④ 금융정보분석원의 「FIU보고정보 보안기준」(2016. 1. 1.시행)을 반영한 ‘FIU보고정보 보안관리 기준’을 자금세탁방지부서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어 IT전담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FIU 보고정보의 보안관리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

(2)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감사 운영 불합리

내규 「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」에 의하면 감사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및 영업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

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영업점 내부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감사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영업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(3)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 운영 미흡

내규 「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」 등에 의하면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직급, 담당 업무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변경 내용 등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

2017년 이후 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, 2016.1.1. 부터 시행된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임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 및 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